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70

발의연월일: 2025. 1. 23.

발 의 자:이헌승·조경태·임이자

박덕흠 · 성일종 · 김 건

송석준 • 서범수 • 박성훈

곽규택 · 강명구 · 김선교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의 근거를 두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을 통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하여 부당하게 이용요금을 할인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시행 령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부정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정하는 한편,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이 고엽제후 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신설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조의4(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중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에게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국가보훈등록 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1. 국가보훈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국가보훈등록증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성명,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보훈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 ③ 국가보훈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국가보훈등록증과 유사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1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국 가보훈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 ⑤ 그 밖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등 록증의 발급·재발급·진위확인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제33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다른 사람의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하거나 제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 법에 따라 지원을받을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한 사람. 다만, 제28조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제외한다.
- 2. 제4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를 받은 사람 및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사람
- 5. 제27조제1항에 따라 일정 기간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그 기간 동안 정지된 지원을 받기 위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보훈등록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가보훈등 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4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등록 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4(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
	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
	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중 제7
	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
	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에게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
	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을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
	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국
	<u>가보훈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u>
	<u>할 수 있다.</u>
	1. 국가보훈등록증을 잃어버리
	거나 국가보훈등록증이 훼손
	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성명,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
	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보
	훈부렁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

<신 설>

제33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 제33조의2(벌칙)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경된 경우

- ③ 국가보훈등록증은 양도하거 나 대여하지 못하며, 국가보훈 등록증과 유사한 명칭이나 표 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1조의 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 여 국가보훈등록증의 진위 또 는 유효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 ⑤ 그 밖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 다.
- 제31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 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 진위확인 등을 위하여 정보시 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국가보훈등록증 을 사용하거나 제4조의2제1항 <신 설>

<u>1.</u>·<u>2.</u> (생 략)

<u><신</u>설>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 법 에 따라 지원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 국가보훈등록 증을 사용한 사람. 다만, 제28 조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제외 한다.

- 2. 제4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을 양도·대여 하거나 양도·대여를 받은 사람 및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사람
- <u>3.·4.</u>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 5. 제27조제1항에 따라 일정 기
 간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그 기간 동안 정
 지된 지원을 받기 위하여 국
 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한 사람